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443
- 발 의 자 : 김영옥 의원(찬성자 19명)
- 발 의 일 : 2026년 2월 9일
-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 정의에서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도 청년미래가치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자치구에 “청년 새마을연대” 단체가 운영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조직이나 미래세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화하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위나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청년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2조(정의)에 “청년새마을연대” 정의를 “새마을운동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하여 청년(「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추가하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 나. 조례 제3조(사업지원)에 “청년새마을연대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청년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6. 2. 20. ~ 2.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은 “청년새마을연대”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6호), 청년 조직에 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 이는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핵심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새마을정신의 미래세대 확산, 청년층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조(정의)	- “청년새마을연대” 정의 개념 신설(제6호)
제3조(사업지원)	- 청년새마을연대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사업 신설(제6호)

- 2026년 2월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새마을회 전체 회원(206,841명) 중 만 45세 이하 회원(대학 및 청년 소속)은 0.3%(638명)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청년 새마을 조직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새마을회 회원 연령별 현황 〉

- 연령별 현황 : 총 206,841명
 - 1) 만 45세 이하(대학 및 청년 소속) : 총 638명
 - 2) 만 45세 이상(새마을회 소속) : 총 206,203명

※ 출처 : 2026년 2월 2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서울시 새마을회 현황 〉

가. 설립 목적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설립일 : 1980년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 설치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회 창립)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서울특별시새마을회 회관)

라. 주요 연혁

- 1) 1980년대 :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설립 및 시도지부 설치, 올림픽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를 개최
- 2) 1990년대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자원봉사(3,450명) 참여, 경제살리기 3조원 저축 운동을 추진
- 3) 2000년대 : 태안 원유유출사고 방제 봉사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전개
- 4) 2010년대 : 서울Y-SMU포럼 창립을 통해 해외봉사활동 추진, 라오스 새마을회관 건립 등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실행
- 5) 2020년대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활동, 서울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 녹색·건강·문화 새마을운동 추진

마. 조직 구성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산하 종로구 등을 포함한 25개 구 지회와 읍면동 새마을조직을 두고 주요 소속 직능 단체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문고지부가 있음.

바. 회원 현황 : 총 206,661명 (2025. 12. 31. 기준)

- 1) 지도자(17,599명) : 임원 263명, 협의회 6,656명, 부녀 7,326명, 직장 280명, 문고 3,074명
- 2) 회원(189,062명) : 임원 3,358명, 협의회 5,979명, 부녀 14,636명, 직장 211명, 문고 164,878명

사. 주요 사업

- 1) 녹색 새마을 : 나무심고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활동
- 2) 건강 새마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갈등 해소, 나눔·돌봄 활동, 재난·재해 구호
- 3) 문화 새마을 : 지역·문화 축제, 배려·공경 문화, 독서·문화·예술 활동, 나라사랑 실천

※ 출처 : 2026년 2월 2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참고로 대전, 울산, 충북, 세종은 청년새마을연합회 등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남, 경북, 충남, 제주는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와 지원 근거로 개정·시행하고 있음(2026년 2월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현행 자치법규 검색 결과 참조).

조례명	제·개정일	주요내용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25. 6.12.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제2조제5호), 청년새마을사업 지원(제4조제9호 및 제10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25. 7. 9.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제6조제7호)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5. 7.10.	청년새마을연합 정의(제2조제5호), 청년새마을연합 지원(제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5.12.31.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제2조제4호), 청년새마을연합회 사업 지원(제3조제13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26. 1. 8.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제2조제6호), 청년새마을운동 사업 지원(제3조제10호 및 제11호)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24. 8. 2.	목적(제1조),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제2조), 지원(제3조) 등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24.12.28.	목적(제1조),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제2조), 지원(제3조) 등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25. 2. 7.	목적(제1조),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제2조), 지원(제3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5. 7. 14.	목적(제1조),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제2조), 지원사업(제3조) 등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제6호는 “청년새마을연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6호에 “청년새마을연대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사업” 추가 규정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중 청년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현행 제3조에 따라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회는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여 2024년부터 청년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하여 청년 사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운동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먼저, 안 제2조제6호에서 “청년새마을연대”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구 지회 단위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직을 정의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 특히, 현재 서울시 새마을회 산하에 광역 단위 조직인 “서울시청년새마을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임을 고려할 때, 기초단위 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를 개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광역단위 조직인 “서울시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정의하거나, “서울시 새마을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청년 조직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5개 자치구 청년새마을연대 구성 현황 〉

- 자치구(21개 자치구, 23개 청년새마을연대 구성<성동, 광진 2개 연대 구성>)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2), 광진구(2),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조직현황 및 회원 수 : 21개구 23개 연대, 총 638명

※ 출처 : 2026년 2월 27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서울시청년새마을연합회 현황 〉

- 구성일자 : 2023. 5. 25.
- 설립목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들의 주체가 되어 서울특별시 내 청년새마을운동을 주도하고, 각 자치구 청년새마을연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직현황 및 회원 수 : 21개구 23개 연대, 총 638명
- 회원자격 : 25개 구 청년새마을연대 소속 회원(단,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추진사업 : 녹색(Green)·건강(Health)·문화(Culture) 새마을사업 추진
 1. 서울시 청년새마을운동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 구 청년새마을연대(이하“구 연대”)의 조직 구성, 운영 지도 및 지원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운동 및 봉사활동
 4. 청년 세대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출처 : 2026년 2월 27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또한, 안 제2조제6호에서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19세 이상 39세 이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청년 연령(만 45세 이하)과 차이가 있어, 지원하려는 대상과 신설하려는 규정이 불일치 하고 있는바, 안 제2조제6호 본문 중 괄호 안의 문구(「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새마을회 사업별 보조금 지원 내역 〉

○ 2023년

연번	사업명	지원액(천원)	사업계획
8개 사업		124,925	
1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11,199	▶ 독거노인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 쪽방주민 고독사 예방 관계망 형성 및 계절나기 생필품 지원
2	햇빛에너지 희망발전소	11,200	▶ 추진내용 : 취약계층세대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	행복한 동행, 쪽방촌 이야기	5,622	▶ 밀반찬 나눔을 통한 거주자 식생활 개선(5회 500명) ▶ 쪽방상담소와 연계한 돌봄사업 추진(5회, 20명)
4	독서문화지도사양성교육	4,398	▶ 독서코칭자격증 과정 운영
5	제43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6,720	▶ 독서경진 구 예선(15개구) 실시, 부문별 시상 ▶ 우수 구·동 문고 선정,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등
6	통일안보체험	68,586	▶ 6.25 격전지, 정전 협정 장소 등 역사적 현장 견학
7	2023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대회	12,000	▶ '23년 서울시새마을운동 추진성과 결산, 성과영상 상영 ▶ 새마을 정부포상 및 새마을지도자 표창 등
8	자랑스러운 새마을여인대회	5,200	▶ 여인대회 스토리텔링(봉사 수기 발표) 예선 ▶ 새마을여인 최종 선발(7명)

○ 2024년

연번	사업명	지원액(천원)	사업계획
8개 사업		81,284	
1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13,000	▶ 새마을회 임직원 참여 강북 지역 취약계층 50세대에 연탄 1만장, 상비약품 등 안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2	수리수리, 집수리	13,047	▶ 주거약자 집수리(도배,장판,싱크대 등)
3	대화와 동행, 쪽방촌 이야기	7,000	▶ 쪽방촌거주자 식생활 개선(밀반찬 나눔) 쪽방상담소와 연계한 돌봄사업 추진
4	청년 미래가치 창출 프로젝트	13,000	▶ 청년세대 '쉬었음' 인구 대상 청년봉사단을 운영 청년 고독사 방지 및 청년돌봄 관련 프로젝트 추진
5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교육	5,000	▶ 새마을지도자 및 시민 대상 독서코칭자격증 과정 운영
6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7,242	▶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독서경진 부문별(독후감, 편지글) 시상, 우수 구·동 문고 15개소 선정 등
7	빛나는 새마을여인 대회	6,000	▶ 새마을부녀회지도자 대상 스토리텔링 공모 및 대회 개최
8	2024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16,995	▶ 25개구 500여명 새마을지도자 등 참여, 정부포상 및 표창수여

○ 2025년

연번	사업명	지원예산(천원)	사업계획
9개 사업		122,000	
1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11,200	▶ 에너지 약자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및 상비약 키트 보급
2	대화와 동행, 쪽방촌 이야기	6,200	▶ 쪽방 상담소와 연계 돌봄(5회), 밑반찬 나눔(5회)
3	빛나는 새마을여인 대회	5,000	▶ 여인 대회 스토리텔링 예선 및 최종 여인대회 개최
4	수리수리, 집수리	11,200	▶ 주거 약자 주택성능 개선(도배, 장판 등)
5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교육	5,000	▶ 독서코칭자격증 과정 운영
6	제45회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6,200	▶ 소외계층 가구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봉사
7	청년미래가치창출 프로젝트	11,200	▶ 호국영령 비석 닦기, 유기견 보호활동, 해양정화 활동 등
8	새마을지도자 대회	16,000	▶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들의 상호 교류활동(수기 공유)
9	서울시 한마음체육대회	50,000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현재 정산 중으로 교부액으로 작성

※ 출처 : 2026년 2월 2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안 제3조제6호의 “청년새마을연대”는 자치구 지회 조직으로, 본 개정안은 자치구 단위 조직 중 청년 지원 사업만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인 서울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등 광역 단위 조직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지원 근거 참조).

〈 2026년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

○ 지원대상 : 4개단체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사업기간 : 2026.1. ~ 12.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청년과 가치 높은 미래만들기,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국민독서 경진 서울특별시대회,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여성대학, 안전문화정착 시민교육, 민주시민개혁 수범 사례 발표 및 회원대회, 온기나눔 사업 등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시민안전의식 제고활동, 안보지킴이 워크숍,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유민주주의 및 안보지킴이 다짐대회 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DMZ 안보현장 체험, 청년, 평화통일 원탁회의
- 보라매 공원 내 자유회관 건물·시설물 공제 가입
·(대상지 주소)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33, (연면적) 2,011㎡

○ 총 사업비 : 369,178천원

※ 출처 : 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09면 재인용.

- 그럼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마을단체의 자치구 단위 조직 중 청년 사업만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예산의 중복 지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광역행정 범위를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영역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자치구 조례에서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예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제2조제1호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종로구 새마을운동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제4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1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지원 근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과 새마을교육·연수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운동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립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